

4. 기타 지위확인

㊦ 회원확인 청구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영구회원으로서 피고 소유의 서울 ○○구 ○○동 소재 위 센터 건물 스포츠클럽의 수영·헬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스포츠 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회원권에 기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물적 범위

일반적으로 스포츠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가입계약에서 회원이 그 회원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한 우선적 이용권에 기하여 회원 이외의 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물적 범위는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용대상으로 하기로 약정한 시설에 한정되고, 계약체결 후에 설치된 신규시설은 위 계약 당시에 이미 당사자 사이에 이를 이용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특별한 약정을 하였거나 혹은 신규시설이 기존시설의 단순한 배치의 변경·확장·증개축 또는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기존시설과 동일성 내지 일체의 불가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8나16694 판결 : 상고기각)

㊦ 임원선출확인 청구(조합이사장)

원고 윤○○가 피고 조합의 이사장, 원고 이○○가 피고조합의 부이사장의 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투표용지상의 기표에 본래의 방식을 결한 점이 있더라도 당해 투표인의 의사를 헤아릴

수 있는 경우 투표용지의 효력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에 있어 각 투표인은 특정후보를 임원으로 선출할 의사로써 투표한다고 추정되고, 이처럼 특정후보에 대한 선출의사로 투표를 함에 있어 비록 그 투표용지에 기재된 기표에 본래의 방식을 결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제반 상황이나 그 기재된 기표의 일체적 고찰에 의하여 당해 투표인의 의사가 어떠한 후보를 지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다른 표시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 투표선출의 자유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득표수에 포함시켜 그 투표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동부지원 1994.2.18. 선고 93가합14149 판결)

❑ 조합원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 전국○○노련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자격요건의 흠결이나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없이 조합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고 피고 조합의 규약도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조합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 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수원지법 1997.7.11. 선고 97가합1788 판결)

❑ 지부장지위확인 청구(노동조합)

원고가 전국 ○○노동조합 ○○지방본부 ○○지방청지부의 지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규약에 의하여 두고 있는 지방본부와 그 산하지부가 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지부장지위확인소송에서의 피고적격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본부, 지방본부 및 지방본부 산하지부를 두고 있고, 지방본부 및 그 산하지부는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지부는 지방본부와 별개의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라고 할 것이어서 지부장지위확인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그 지부에 있다 할 것이고, 지방본부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광주고법 1993.12.10. 선고 93나400 판결)

☐ 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

피고는 대한불교○○종 총무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한 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총무원장 선거절차 및 이에 기한 당선을 무효라고 한 사례.(서울지법 1999.10.1. 선고 99가합6550 판결 : 항소각하·상고기각)

☐ 대학원합격자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 운영의 ○○대학교 대학원이 2008. 12. 14. 실시한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의 합격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학교법인이 입학시험 합격자 중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학교법인이 그가 실시한 대학원 입학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일정한 등록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하여 재학생의 자격을 부여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합격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합격자에 대하여 소정의 등록기간과 등록절차 및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자가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등록 불이행의 책임을 합격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

②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합격자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등록절차에 관한 고지 없이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의해 공고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합격취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 11. 4. 선고 99가합437 판결)

☐ 낙찰자지위확인 청구

피고는 2015. 10. 28. 그 산하 ○○출장소 공고 제2015-1111호로 공사입찰공고하여 같은 해 12. 6. 16:00 실시한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신축설비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 낙찰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출자비율이 자신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입찰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

건설업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2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각 시공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도급받은 각 건설업자가 독자적으로 각자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일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처럼 될 것이므로 위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하여 그 한도액을 적용하자는 것이고 각 건설업자의 시공비율 등은 그 내부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데, 시공 전 미리 공동도급계약비율이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개의 공동수급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비율에 따른 금액이 그 자신의 독자적인 도급한도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개 업체의 도급한도액의 합산액이 낙찰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위 업자들의 입찰은 무효가 아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3859 판결)

❖ 낙찰자지위확인 청구

피고가 2013. 9. 14. 자 ○○청 시설공고 제2013-123568호로 공사입찰 공고하여 2013. 10. 22. 16:00 실시한 ○○-○○간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낙찰자임을 확인한다.

○○청장의 2013. 12. 3. 자 ○○청시설공고 제2013-123568-11호로 공사입찰 공고한 위 같은 공사의 2013. 12. 10. 자 입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국가를 상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인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민사소송등인지방법원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예산회계법 제77조 제3항, 예산회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기초한 재무부령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 제55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와는 다르다고 보여지므로, 최초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원고는 계약당사자와 같이 공사대금의 청구 등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고가 유효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아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금전으로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불과하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입찰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기재를 정정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끝장에 별도의 총괄집계표를 첨부하여 첫장의 총괄집계표를 무효로 하고 이를 대신한다는 취지로 정정하고 그 곳에 정정인을 찍었다면,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6호, 입찰유 의서 제6조, 제10조 제7호, 제11호,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 제4조 각 조항의 어디에도 말소 또는 정정된 곳 자체에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령들이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정날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입찰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하여 권한 없이 정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입찰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기재를 정정하면서 정정할 곳에 횡선을 긋고 정정인을 찍는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입찰서상의 투찰금액과 다른 금액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1페이지 총괄집계표상의 기재금액을 산출내역서의 끝장에 별도의 총괄집계표를 첨부하고 거기에 위 1페이지의 총괄집계표는 계산착오로 무효이고 이를 총괄집계표로 한다는 취지로 정정한 후 그 곳에 정정인을 찍는 방법으로 정정하였어도 전체적으로 입찰서상의

투찰금액에 맞추어 제대로 정정된 이상 입찰내역서의 작성이 정정의 방법에 위반되거나 그로 인하여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또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로 되어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9호와 이에 근거한 입찰유의서 제10조 제8호에서 입찰무효사유로 규정한 담합의 의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9호와 이에 근거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1993.5.20. 회계예규 2200.04-102-12) 제10조 제8호에서 입찰무효의 사유로 규정한 담합이라 함은, 입찰자가 입찰을 함에 즈음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 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짝값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최저가입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지 기업이익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 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의 담합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공1995상, 431)